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 경위

- 가. 제 안 자 : 박창순 의원 등 16인
- 나. 의안번호 : 제2514호
- 다. 제 안 일 : 2011. 5. 6.
- 라. 회 부 일 : 2011. 5.16.

2. 제안 이유

우리시 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 시 개별보고서를 작성토록 하여 국외여행의 질을 제고시키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을 간화하기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와 의결정족수를 늘리는 등 공무국외여행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정하여 시행코자 함.

3. 주요 내용

- 가. 공무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안 제4조제1항)
- 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하도록 함.
(안 제4조 제2항)
- 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함.(안 제4조 제3항)

- 라. 심사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인은 과반수가 되어야 함
(안 제4조 제4항)
- 마. 심사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출석위원 과반수에서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으로 규정 함.(안 제6조 제1항)
- 바. 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각각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 하도록 함(안 제9조 제1항)

4. 검토 의견

가. 의안성립에 대하여

- 본 개정 안은 박창순 의원님을 비롯한 16인의 의원께서 2011.
5. 6발의하여 2011. 5. 16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으로서
-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5
분의1 이상(7인 이상)의 의원 연서로 발의한 의안이며 발의요건과
형식요건 그리고 성립요건을 갖추어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의안입니다.

나. 상위법 저촉여부에 대하여

-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에서 “지방의회는 소속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내용에 부합하는 개정안입니다.
- 다만, 2009. 3.11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지방의회의 국외
여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
여줄 것을 지방자치법 제166조(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의 규정을 적용 권고하였으나(개정규칙 안 자료 제5쪽 참조)
이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반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 또한 우리시 의회는 본 규칙을 2001.2.19제정 이래 2002.12.27과 2007.12.3 등 2회에 걸쳐 개정하여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2년 앞서 시행함으로써 국외여행의 제도적 • 운영적인 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왔다고 판단됩니다.

다. 종합 의견

- 본 규칙 제2조의 적용범위에 제5호와 제6호를 신설하여 “제5호 성남시장과 시 산하 단체장이 해외출장을 요청할 경우”와 “제6호 성남시의회 공무국외여행 운영계획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 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적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 제3조 (허가권자) 문장 중간 부분의 “공무국외여행은” 다음에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을 명시하여 심사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4조 제1항 “허가권자는”을 개정안에는 “의장은 소속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으로 명시하였으나 본조 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범위에서 그 구성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성남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하여 제3조의 허가권자와 일치시켜 혼동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 제4조 제2항도 개정안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을 현행과 같이 “심사위원회는 대학교수 2인, 시민사회단체 2인, 의회 부의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2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라고 명문화 하여 구성인원을 명확히 하고 민간인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구성하며 임기와 연임 그리고 보궐 시 잔여임기 등을 명시하여 시행착오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제4조 제4항에 명시한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하며”를 제4조 제3항 첫 문장에 삽입하여 위촉자와 심사위원회 임원구성을 명시하고 제4조 제4항 중 “민간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는 제4조 제2항 심사위원구성에서 이미 민간인 비율을 제시하고 있어 삭제하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그밖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임무를 대리한다.”를 명시하여 심사위원회 임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를 과반수에서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공무국외여행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고자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 제9조 제1항 여행보고서 제출에 있어 현행 공무국외여행을 “마친 의원은”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들은 각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의원이 단체로 공무국외 출장한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부여 내용을 합동보고서에 기재토록 하여 보고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활용하고자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내용 중 개별임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하여 활용성과 효율성, 편리성을 도모하도록 현행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제시한 방안을 감안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 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